검 토 보 고 서

의 안 제147호

2019. 10. 22.

건 명	논산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(도로교통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10. 14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10. 14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2019년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 장애인콜택시 업무 중 콜센터 사무가 충청남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「특별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」를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이용대상자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특별 교통수단을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O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O 시장의 책무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의 규정(안 제4조~제6조)
- O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등록신청·심사의 규정(안 제7조~제9조)
- O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및 연장의 규정(안 제10조~제11조)
- O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신청, 운전자의 준수시항의 규정(안 제12~제13조)
- O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의 규정(안 제14조~제15조)
- O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, 수탁기관의 의무의 규정(안 제16조~제17조)
- O 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의 규정(안 제18조~제19조)
- O 수입금 및 차량유지 관리의 규정(안 제20조~제21조)
- O 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의 규정 (안 제22조)

□ 검토의견
○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2조, 제16조,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제5조, 제6조 등 관계법령에
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